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9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9. 12. 31)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14조의2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신설)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
 - 여성보건휴가: 매월1일(무급,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내 10일(유급, 임신검진의 사유)

나.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9항)

- 각급 학교 근무자와 각급 학교 외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통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

다. 특별휴가(포상휴가) 신설 (안 제14조의2제10항)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직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라.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 1일(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휴가: 2일 → 3일(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0. 9. 14. ~ 9. 24.)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0. 8. 20. ~ 9. 9.)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재입법예고 실시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6
- 관계법규 : 별첨 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u>1</u>
출산	배우자	<u>10</u>
	<u>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u>	<u>1</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u>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u>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 ② (생략)</p> <p>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 ~ ⑧ (생략)</p> <p>⑨ 「<u>평생교육법</u>」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u> <u>연 4일 이내</u></p> <p>2. <u>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u> <u>연 2일 이내</u></p> <p><신 설></p>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⑨ 공무원은 「<u>평생교육법</u>」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⑩ <u>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출산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출산	배우자	1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최원석(02-399-9239)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의견 없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총무과	통보일	2020.9.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14조의2 안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조직의 운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종 복무 관련 법령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2020. 4. 1.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목록 최종”) - 단,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20. 1. 16.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법령과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특히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의 일수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포상휴가’에 대해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 		“참고의견”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30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최원석	전화번호	02-399-923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9월 2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9월 2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9월 23일</p>				

【별첨 6】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성 명 : 최원석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3999-23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전반	<p>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 사항 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함</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해당 없음		

【별첨 7】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7 (특별휴가)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2.31.>

[별표 1] 경조사 휴가 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개정 2019. 4.16.>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0.8.25.]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25., 일부개정]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